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39호 2020. 7. 24(금)

선 람	기관의 장

고 시

- 남원시 고시 제2020-127호 남원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----- 1

공 고

- 남원시 공고 제2020-1386호 남원 도시계획시설(중로2-34호선)사업 공사완료 공고 ----- 2
-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 공고 제2020-23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 3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고시 제2020-127호

남원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남원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학교) 경미한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(☎063-620-6452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남 원 시 장
2020년 7월 24일

1. 남원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

가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학교)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치	면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510	학교	초등학교 (원천 초등학교)	주천면 장안리 248 일원	15,268	(감)48	15,220	남원시고시 제2010-34호 (2010.8.13.)	-

나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학교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	비고
510	학교	◦원천초등학교 면적변경 : 15,268m ² →15,220m ² (감 48 m ²)	◦ 인근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라 기 결 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함	

2. 남원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: “실 음생략”

남원시 공고 제2020-1386호

남원 도시계획시설(중로2-34호선)사업 공사완료 공고

남원도시계획시설(중로2-34호선)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 된 월락동 수창해뜨레 주택건설사업관련 도시계획시설(중로2-34호선)사업이 완료되었기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하고, 관련도서를 남원시청 도시과(☎ 063-620-645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남 원 시 장
2020년 7월 24일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남원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

나. 명 칭 : 도시계획도로(중로2-34호선) 개설공사

2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남원시 월락동 441번지 일원

3.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

등급	류별	번호	사업위치	사업량(m)	시설결정일
중로	2	34	월락동 441번지 일원	L=34.0m, B=15.0m	남원시 고시 제2018-100호 (2018. 8. 16.)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

- 수창건설(주) 대표 이성식
- (주)디에스종합건설 대표 손창욱

나. 주 소

-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775-13
-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54, 301호(부전동, 한솔폴라리스)

5. 사업기간 : 2019.07.26 ~ 2020.07.30.

6. 관련도서 : 실음생략. 끝.

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 공고 제2020 - 23호

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: 2020. 7. 23 .

제 출 자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: 관광시설사업소장

1. 개정이유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 및 가상현실체험관 등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안전부·국가보훈처의 ‘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’ 통보에 따른 입장료의 감면 조항 정비 (안 제8조제1항제4호)
 - 별표 1의2 신설
- 나. 입장요금의 미반환 규정 정비 (안 제10조)
 - 제10조의 제목 “입장요금의 미반환” → “입장요금의 반환”
- 다. 주차료 감면 규정 정비 (안 제12조)
- 라. 위탁기간의 변경 (안 제11조제2항, 제12조제2항, 제12의2제2항)
 - 1년 또는 2년 이내 → 5년 이내, 1회 한해 5년 이내 연장 가능
- 마. 그 밖에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공유재산법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0. 7. 23 . ~ 2020. 8. 13.(21일간)

- 결 과 :

- 2) 비용추계서 : 비대상
- 3) 예비규제심사 : 해당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면제대상자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입장요금의 반환) 입장하기 전에 이미 납부한 입장요금에 대한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하고 입장요금을 반환한다.

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위탁사무”를 “위탁사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주차장 관리를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「남원시 주차장 조례」 제3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

할 수 있다. 이 경우 할인 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할인 요율을 적용한다.

⑤ 시장은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1시간 이내 주차시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단,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2의 제목 “(VR체험관)”을 “(가상현실체험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VR체험관”을 “가상현실체험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② 시장은 광한루원 가상현실체험관 관리를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3 중 “VR체험관”을 “가상현실체험관”으로 하며 “VR체험료”를 “가상현실체험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입장료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입장료를 면제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5. ~ 12. (생략)</p> <p>② 삭제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8조(입장료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면제대상자</u></p> <p>5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입장요금의 미반환) 이미 납부한 입장요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입장하기 전에 입장요금의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하고 입장요금을 반환한다.</p>	<p>제10조(입장요금의 반환) 입장하기 전에 이미 납부한 입장요금에 대한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하고 입장요금을 반환한다.</p>
<p>제11조(경내 시설물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</p>	<p>제11조(경내 시설물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

제12조(주차료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에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광한루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: 50퍼센트 (단, 개소당 2시간 이내)
2. 할인 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
3.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: 1시간 이내 면제(단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)

제12조(주차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시장은 주차장 관리를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-----
----- 위탁사무-----

-----.

④ 시장은 「남원시 주차장 조례」 제3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할인 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할인 요율을 적용한다.

<신 설>

제12조의2(VR체험관) ① 시장은 광한루원 VR체험관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별표 3과 같다.

② 시장은 광한루원 VR체험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에 체험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1시간 이내 주차시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단,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2(가상현실체험관) ① -----
----- 가상현실체험관-----
-----.

② 시장은 광한루원 가상현실체험관 관리를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」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<삭 제>

[별표 1의2]

광한루원 입장료 면제대상자(제8조제1항제4호 관련)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
 - 가.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 - 나.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 - 다.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
 - 나.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 - 다.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
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
 - 가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
 - 나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
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
 - 가. 5·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
 - 나. 5·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5·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 - 다.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·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
 - 가.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
 - 나.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 - 다.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
 - 가. 의사상자. 다만,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.
 - 나. 의사자유족 중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. 다만,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.
 - 다.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
8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
 - 가. 등록포로
 - 나.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

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